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단1526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유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한, 조지윤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진도군 D 전 1,564㎡에 관하여 2019. 10. 29.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진도군 D 전 1,564㎡에 관하여 2019. 10. 29.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2017년 8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 임차료 등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27670)를 제기하여 2019. 11. 5. C이 원고에게 ‘26,4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8.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2019. 11. 12. C에게 송달되어 2019. 11. 27. 확정되었다.

나. C은 피고에게 2019. 10. 29. 전남 진도군 D 전 1,5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2019.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라.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11895)를 제기하여 2021. 5. 13. 원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5.자 2019가소627670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어서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차료 채권은 사해행위시인 2019. 10. 29.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을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21. 1. 22. E 앞으로 202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갑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7. 7.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9,835,602원(=23,52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18.부터 2019. 11. 12.까지 지연손해금 1,652,843원+2019. 11. 13.부터 2021. 7. 7.까지 지연손해금 4,662,759원)이고, 원고는 그 중 27,000,000원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